국토교통부 훈령 제1627호

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

국토교통부

개정 기록표

| 순번 (No) | 개정일 | 발령번호 | 주요 개정내용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| 2017.5.30 | 제854호 | 제정 |
| 2 | 2023.6.12 | 제1627호 | 보존관리 주체, 용어 등 현행화 |
| 3 | | | |
| 4 | | | |
| 5 | | | |
| 6 | | | |
| 7 | | | |
| 8 | | | |
| 9 | | | |
| 10 | | | |

목 차

| 제1장 총 칙 | 4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1조(목적) | 4 |
| 제2조(정의) | 4 |
| 제3조(적용대상) | 4 |
| | |
| 제2장 보존처리 | 4 |
| 제4조(보존처리기관) | 4 |
| 제5조(보존처리) | 5 |
| 제6조(절차) | 5 |
| 제7조(방안수립) | 6 |
| 제8조(사후관리) | 6 |
| | |
| 제3장 조사분석 | 6 |
| 제9조(조사분석) | 6 |
| 제10조(기록 및 시료관리) | 7 |
| 제11조(제한) | 7 |
| | |
| 제4장 보존환경 | 7 |
| 제12조(보존환경) | 7 |
| 제13조(환경유지) | 7 |
| | |
| 제5장 복원·복제 | 7 |
| 제14조(복원) | 7 |
| 제15조(복제) | 8 |
| 제16조(유효기간) | 8 |
| | |
| [별지 제1호서식]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| 9 |
| [별지 제2호서식] 자료 보존처리 의뢰서 | 11 |
| [별지 제3호서식] 자료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 | 12 |

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 자료 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보존관리"라 함은 보존처리, 조사분석, 환경유지, 복원·복제 등을 말한다.
 - 2. "보존처리"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·물리적 행위를 말한다.
 - 3. "조사분석"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.
 - 4. "환경유지"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·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 - 5. "복원"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.
 - 6. "복제"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, 모사, 모조, 실 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.
 - 1. 자료 및 등록예정 자료의 보존관리
 - 2. 수탁 등 일시 보관자료의 보존관리
 - 3. 외부에서 의뢰 받은 자료의 보존관리

제2장 보존처리

- 제4조(보존처리기관) ① 국립항공박물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 - ② 관장은 효율적인 박물관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자료관리책임자

를 지정할 수 있다.

- 제5조(보존처리)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보존처리는 자료의 보존, 원형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 - 2. 보존처리는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담당자·보존처리자(외부 전문 가 포함)에게 의뢰하여야 하며, 별지 제1호 서식의 「보존처리 기록 카드」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관장은 보존처리 시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고고학적, 미술사적,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존처리를 제한 할 수 있다.
 - ③ 관장은 자료의 보존관리 시 도난 · 분실 ·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절차) ① 자료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보유중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 야 하며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③ 수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자료를 보존처리하려는 사람은 원 소장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④ 외부의 항공 관련 자료 소장자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장에게 자료의 보존처리를 요청 할 수 있다.
 - 1.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「자료 보존처리 의뢰 서」와 별지 제3호 서식의 「자료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」를 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2. 보존처리 의뢰 자료는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이 직접 자료를 인계 ·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3. 관장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

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- 4. 보존처리와 관련된 연구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.
- 5. 관장은 보존처리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에 게 부담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장은 의뢰인 및 기관에게 예상비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7조(방안수립)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처리 목표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재료나 처리방법이 없으면, 보존처리를 재검토한다.
 - 2. 새로운 재료와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, 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염두 해 두어야 한다.
- 제8조(사후관리) 관장은 보존처리 후 자료의 보존 상태와 보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.

제3장 조사분석

- 제9조(조사분석) 관장은 소장 자료의 조사분석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과학적 조사나 역사적 정보, 문헌적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.
 - 2. 조사방법 및 과정이 자료에 미치게 될 직·간접적 영향에 대해 검 토하여 신중하게 실시한다.
 - 3. 과학적 장비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료의 물리적·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, 자료의 사용 재료 및 제작 기법을 조사 연구하여 보존 처리 등에 활용한다.
 - 4. 자료분석은 비파괴분석을 기본으로 하며, 필요 시 박락된 편 등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양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다. 채취한 시료는 분석이 끝난 후에 정해진 장소에 일괄 보관하며 관장의책임 하에 관리한다.

- 제10조(기록 및 시료 관리) ① 관장은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관장은 자료 조사분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「보존처리 기록 카드」에 기록해야 한다.
 - ③ 조사분석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제한) 관장은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고고학적, 미술사적,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사분석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4장 보존환경

- 제12조(보존환경) 관장은 수장고와 전시실 내 자료의 재질별 적정 보 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환경유지) ① 관장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주기(최소 2회 이상/년)적으로 자료를 교체·전시해야 한다.
 - ② 관장은 자료의 보존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, 훼손된 자료는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 - ③ 관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, 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에 반입될 경우 방충, 살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장 복원・복제

- 제14조(복원) ① 관장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한다.
 - ② 관장은 복원된 부분이 복원 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관장은 복원 과정 중에 생산되는 복원 제작기술 및 사용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제15조(복제) ① 관장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하여야 하며,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관장은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

(앞쪽)

| 분 | 류 | | | | | 자료 | 번호 | | | | | | 시 | 대 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---|-----|----|---|------|-----|----|----|--|
| 자호 | 료 명 | | | | · | | | | | | | | 점 | 수 | | | |
| 인 계 일 | | | | | 인 계 ㅈ | | | | | | | | 처 | 리 자 | | | |
| 인 수 일 | | | | | | 인 수 | 누 자 | | | | | | 처리 | l장소 | | | |
| 처리경위 | | [] | 소장 | 유물 | [] |] 전시 | [] |] 학 | 술 | [] | 활용 | [| [] 외 | 부기관 | 의뢰 | | |
| 소 장 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처리사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처리기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재 | 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ਜ | 처리 | 가 | 로 | | 세 | 로 | | 높 | 이 | | 두 | 께 | | 무게 | | 비고 | |
| '' 격 | 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cm) | 처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ᄍ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(뒤쪽)

| | (1) |
|---|---------|
| 처 | |
| 리 | |
| | |
| 후 | |
| | |
| 상 | |
| 태 | |
| | 처리 전 사진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처리 후 사진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
자료 보존처리 의뢰서

| 연번 | 자료명 | 수 량 | 비고 | | | | | |
|--|-----|-----|-------|--|--|--|--|--|
| 1 | | | | | | | | |
| 2 | | | | | | | | |
| 3 | | | | | | | | |
| 4 | | | | | | | | |
| 5 | | | | | | | | |
| 6 | | | | | | | | |
| 7 | | | | | | | | |
| 8 | | | | | | | | |
| 9 | | | | | | | | |
| 10 | | | | | | | | |
| 계 | | | 총 건 점 | | | | | |
| 상기의 자료에 대하여 귀 기관에 보존처리를 의뢰합니다. 년 월 일 소 속: 생년월일: 연 락 처: 성 명: (서명 또는 인) 국립항공박물관장 귀하 | | | | | | | | |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자료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

본인은 국립항공박물관(이하 '박물관')에 자료 보존처리를 의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.

- 1. 의뢰 자료가 적법한 본인의 소유이며 도굴·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,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.
- 2. 의뢰 자료의 보존처리 결과는 다른 목적(진위판단, 문화재 가치 계산 등)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.
- 3. 의뢰 자료는 의뢰인의 책임 하에 운송하며, 인수인계 장소는 박물관으로 한다.
- 4. 의뢰 자료의 보존처리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귀 박물관의 판단에 의해 행하도록 위임한다.
- 5. 의뢰 자료의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획득한 연구 자료에 대한 권리는 귀 박물관에 귀속됨을 확인한다. 또한 이 연구 자료에 대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·공개·활용됨에 동의한다.
- 6. 박물관은 보존처리 완료된 자료의 사후조치로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, 보존처리 관련 사항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.
- 7. 보존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.

년 월 일

소 속:

생 년 월 일:

여 락 처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국립항공박물관 귀하